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림재난총괄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산불현장 지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소속기관으로 권역별 산불방지센터를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4명(4급 2명, 5급 4명, 6급 6명, 7급 4명, 8급 2명, 연구사 2명, 소방위 2명, 소방사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산불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에 필요한 인력 86명(6급 32명, 7급 27명, 9급 2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산림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에 산림에 연접한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시 산림재난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8급 9명)을 각각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던 산림청 소속기관인 서부지방산림청장을 앞으로는 4급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간에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산림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산림재난예측분석을 위해 산림재난예측분석과를 신설하고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청에 임도정책 및 임도관리의 체계적 운영 등 기능강화를 위하여 2029년 1월 5일까지 존속하는 임도관리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산림청에 임도정책 및 임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1월 5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산림정책과·산림자원과·목재산업과·사유림경영소득과·국유림경영과 및 임업직불제팀”을 “산림정책과·산림자원과·목재산업과·사유림경영소득과·국유림경영과·임업직불제팀 및 임도관리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임도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도정책의 기획 및 총괄
2. 임도시설의 설치·보수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임도예산의 편성 및 결산 총괄

제9조제4항 중 “산림환경보호과·산불방지과·산사태방지과·산림병해충방제과·산림생태복원과·도시숲경관과·수목원정원정책”을 “산림환경보호과·산림재난총괄과·산불방지과·산사태방지과·산림병해충방제과·산림생태복원과·도시숲경관과·수목원정원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림재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재난방지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산림재난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 및 협의
4. 산림재난 위험성 분석에 따른 주민대피 체계 구축 및 운영 총괄
5.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 대한 지도 및 감독
6. 산림분야 재난안전사업 성과목표 수립 및 재난안전관리 평가 총괄
7.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 산림재난방지 검토에 관한 사항
9. 산림재난피해지 조사·복구·복원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0. 재난관리자원 동원 계획의 수립 및 이행
11. 중앙사고수습본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12. 중앙·지자체·유관기관 산림재난 대응 합동훈련 및 산림재난방지 교육 계획 수립 등 운영 총괄
13.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분석 및 산림재난정보 공동 활용 총괄
14. 산악기상관측망의 구축·운영
15. 그 밖에 산림재난 관련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9조제7항(중전의 제6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제4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예방·복구 및 대응”을 “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한다.

14. 산불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를 “서부지방산림청장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서부지방산림청장과”로 한다.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제6장의2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권역별 산불방지센터) ①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회계·결산·용도 및 물품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기록물의 분류·접수·발송·이관·보존 및 관리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6. 자금의 운용·회계·결산 및 세입의 조정·징수
7.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유관기관 협업 조정 및 정책지원
9. 기관운영 성과평가 및 주요 업무보고

10. 산불재난의 상황실 운영
11. 산불재난상황 판단 및 초기대응
12. 산불재난상황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13.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진화자원 요청·관리
14. 산림헬기의 출동상황 관리 및 운용
15. 재난안전통신망 등 무선통신망 구축·운영
16. 기상상황에 따른 위기징후 분석
17. 위기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국가지도통신망을 이용한 영상회의 운용
18. 산불현장 진화지휘 지원 총괄
19. 산불현장 진화작전 계획 수립 및 자원운용
20. 산불현장 유관기관 자원배치 조정
21. 산불현장 투입 진화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22.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
23. 산불진화장비 운용 및 관리

제21조제1항 단서 중 “13명”을 “15명”으로, “5명”을 “6명”으로, “3명”을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급”을 “7급 1명),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6급”으로 한다.

제22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3과

같다.

제10장의2의 제목 “평가대상 조직”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제23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중 “산림청”을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조직”을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323”을 “327”로, 일반직 계 “317”을 “321”로,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을 “7”로, 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5”로,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2”를 “63”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43”을 “44”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336”을 “342”로, 일반직 계 “330”을 “336”으로,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을 “7”로, 행정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5”로,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3”을 “64”로,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48”을 “50”으로,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6”을 “27”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30”을 각각 “825”로,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0”으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를 “6”으로 하고, 행정주사 · 임업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1 다음에 “임업주사 32”를 신설하며, 행정주사보 · 임업주사보 또는 임업연구사 10 다음에 “임업주사보 27”를 신설,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77”을 “186”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40 다음에 “임업서기보 27”를 신설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37”을 각각 “832”로,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0”으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를 “6”으로 하고, 행정주사·임업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1 다음에 “임업주사 32”를 신설하며,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임업연구사 10 다음에 “임업주사보 27”를 신설,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84”를 “193”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40 다음에 “임업서기보 27”를 신설한다.

별표 7의3을 신설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64”를 각각 “267”로, 4급 이하 “259”를 “262”로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임도관리팀은 2029년 1월 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임도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

부터 임도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목재산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은 2029년 1월 5일까지 존속한다.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3]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6항 본문 관련)

총계	24
일반직 계	18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4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4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4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
연구사	2
소방공무원 계	4
소방위	2
소방사	2
기상공무원 계	2
기상주사	2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의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23조의2 관련)

1. 산림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가. 산림보호국 산림재난통제관	0명	2027년 9월 30일까지
나. 산림보호국 산림재난총괄과	3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2. 산림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가. 권역별 산불대응 업무(권역별 산불방지센터)	26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 산불진화 업무(지방산림청)	86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산림산업정책국) ① (생략)	제7조(산림산업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산업정책국에 <u>산림정책과 · 산림자원과 · 목재산업과 · 사유림경영소득과 · 국유림경영과 및 임업직불제팀</u> 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u>산림정책과 · 산림자원과 · 목재산업과 · 사유림경영소득과 · 국유림경영과 · 임업직불제팀 및 임도관리팀</u> ----- -----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제	
⑥ 목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u>임도시설의 설치 · 보수 계획의 수립 및 추진</u>	<삭제>
⑦ ~ ⑨ (생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신설>	⑩ <u>임도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임도정책의 기획 및 총괄</u> 2. <u>임도시설의 설치 · 보수계획의 수립 및 추진</u>

제9조(산림보호국) ① ~ ③ (생략)

④ 산림보호국에 산림환경보호과 · 산불방지과 · 산사태방지과 · 산림병해충방제과 · 산림생태복원과 · 도시숲경관과 · 수목원정원정책과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상황실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생략)

<신 설>

3. 임도예산의 편성 및 결산 총괄

제9조(산림보호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산림환경보호과 · 산림재난총괄과 · 산불방지과 · 산사태방지과 · 산림병해충방제과 · 산림생태복원과 · 도시숲경관과 · 수목원정원정책-----

-----.

⑤ (현행과 같음)

⑥ 산림재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재난방지 정책의 기획 및 총괄 · 조정

2.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산림재난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 및 협의

4. 산림재난 위험성 분석에 따른 주민대피 체계 구축 및 운영 총괄

5.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
대한 지도 및 감독
6. 산림분야 재난안전사업 성과
목표 수립 및 재난안전관리
평가 총괄
7.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
항
8.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 산림재난방지 검
토에 관한 사항
9. 산림재난피해지 조사·복구
·복원 계획의 수립 및 총괄
·조정
10. 재난관리자원 동원 계획의
수립 및 이행
11. 중앙사고수습본부 관련 제
도에 관한 사항
12. 중앙·지자체·유관기관 산
림재난 대응 합동훈련 및 산
림재난방지 교육 계획 수립
등 운영 총괄
13.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
분석 및 산림재난정보 공동
활용 총괄
14. 산악기상관측망의 구축·운

⑥ 산불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u><신설></u> ⑦ 산사태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u>산사태발생지 복구·복원 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u> 5. ~ 10. (생략) 11. <u>산림재해에 관한 업무의 총괄</u> 12. <u>지진·해일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복구 및 대응</u> 13. <u>산악기상관측망의 구축·운영</u> ⑧ ~ ⑫ (생략) 제13조의2(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u>영</u> 15. <u>그 밖에 산림재난 관련 다른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u> ⑦ ----- -----. 1. ~ 13. (현행과 같음) 14. <u>산불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 ⑧ ----- -----. 1. ~ 3. (현행과 같음) <u><삭제></u> 5. ~ 10. (현행과 같음) <u><삭제></u> 12. ----- -- <u>예방</u> <u><삭제></u> ⑨ ~ ⑬ (현행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와 같음) 제13조의2(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① ----- -----
---	--

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4조(지방산림청) ①북부·동부 및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신설>

----- . <단서 삭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방산림청) ①-----

----- 서부지방
산림청장과 -----

--. 다만, 서부지방산림청장과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장의2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신 설>

제16조의2(권역별 산불방지센터)

①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문서·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회계·결산·용도 및 물품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기록물의 분류·접수·발송·이관·보존 및 관리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6. 자금의 운용·회계·결산 및 세입의 조정·징수

7.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유관기관 협업 조정 및 정책지원

9. 기관운영 성과평가 및 주요 업무보고

- 10. 산불재난의 상황실 운영
- 11. 산불재난상황 판단 및 초기 대응
- 12. 산불재난상황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 13.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진화 자원 요청·관리
- 14. 산림헬기의 출동상황 관리 및 운용
- 15. 재난안전통신망 등 무선통신망 구축·운영
- 16. 기상상황에 따른 위기징후 분석
- 17. 위기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국가지도통신망을 이용한 영상회의 운용
- 18. 산불현장 진화지휘 지원 총괄
- 19. 산불현장 진화작전 계획 수립 및 자원운용
- 20. 산불현장 유관기관 자원배치 조정
- 21. 산불현장 투입 진화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 22.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3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명,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5명, 행정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생략)

③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정보보호

23. 산불진화장비 운용 및 관리

제21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15명 -----

----- 6명 -----

----- 4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보안을 담당하는 1명(<u>7급 1명</u>)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u>7급 1명</u>),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u>6급 -----</u>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② ~ ⑤ (생략) <u><신설></u>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3과 같다.
⑥ ~ ⑪ (생략)	⑦ ~ ⑫ (현행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제10장의2 <u>평가대상 조직</u>	제10장의2 <u>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u>
제23조의2(평가대상 조직) <u>산림청</u>에 두는 평가대상 <u>조직</u>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23조의2(평가대상 조직) <u>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u> -----.

신·구정원대비표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23</u>	<u>327</u>	+4
·	·	·	
·	·	·	
일반직 계	<u>317</u>	<u>321</u>	+4
·	·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6</u>	<u>7</u>	+1
·	·	·	
·	·	·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4</u>	<u>5</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62</u>	<u>63</u>	+1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u>43</u>	<u>44</u>	+1
임업주사보				
•		•	•	
•		•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36</u>	<u>342</u>	+6
·	·	·	
·	·	·	
일반직 계	<u>330</u>	<u>336</u>	+6
·	·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6</u>	<u>7</u>	+1
·	·	·	
·	·	·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4</u>	<u>5</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u>63</u>	<u>64</u>	+1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u>48</u>	<u>50</u>	+2

•	•	•	
•	•	•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u>26</u>	<u>27</u>	+1
•	•	•	
•	•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30</u>	<u>825</u>	+95
일반직 계	<u>730</u>	<u>825</u>	+95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1</u>	<u>0</u>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5</u>	<u>6</u>	+1
·	·	·	
·	·	·	
<u>임업주사</u>	<u><신 설></u>	<u>32</u>	+32
·	·	·	
·	·	·	
<u>임업주사보</u>	<u><신 설></u>	<u>27</u>	+27
·	·	·	
·	·	·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u>177</u>	<u>186</u>	+9
·	·	·	
·	·	·	
<u>임업서기보</u>	<u><신 설></u>	<u>27</u>	+27
·	·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37</u>	<u>832</u>	+95
일반직 계	<u>737</u>	<u>832</u>	+95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1</u>	<u>0</u>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5</u>	<u>6</u>	+1
·	·	·	
·	·	·	
<u>임업주사</u>	<u><신 설></u>	<u>32</u>	+32
·	·	·	
·	·	·	
<u>임업주사보</u>	<u><신 설></u>	<u>27</u>	+27
·	·	·	
·	·	·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u>184</u>	<u>193</u>	+9
·	·	·	
·	·	·	
<u>임업서기보</u>	<u><신 설></u>	<u>27</u>	+27
·	·	·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64</u>	<u>267</u>	+3
일반직 계	<u>264</u>	<u>267</u>	+3
·	·	·	
·	·	·	
4급 이하	<u>259</u>	<u>262</u>	+3